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강 동 효

2020년 8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규 용

강 동 효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강동효의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대 경



위 원

박 규 용



위 원

박 준 선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년 8월



# Study on Legal Welfare for Socially Disadvantaged

Kang, Dong Hyo  
(Supervised by professor Dr. Park, Kyu Y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202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국문초록>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현재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법률복지의 의미, 제공기관의 파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소송상·소송외적 구분에 의한 지원제도 분석, 피해자 지원 등과 같은 영역별 구분에 의한 법령을 검토하였다. 법률복지의 현행규정과 운영상에 있어 문제점과 효율성 증진 방안을 분석하였다.

사법절차적 기본권의 실효적 향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절차에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자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는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법률복지의 제공이란 단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을 넘어 약자와 소수의 권리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법률복지란 법률구조보다 더욱 큰 범위에서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이며, 원고와 피고 혹은 피의자, 피해자 등 각자 다른 상황에 놓인 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법률상담에서부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공되는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 외국인과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법리진행을 위한 외국어통역사 및 수화통역사 지원, 그리고 가명조서 및 신변보호조치 등과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호제도 등과 같은 각종 법리적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률복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을 살펴본 결과, 현행 법제의 일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복지제공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행 사법기관은 제도 활용에 소극적임을 운용 현황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금보다 효율적인 법률복지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입법론적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수입료와 평가방식 개선, 진술조

력인의 지원근거 개정 및 상근인력 충원과 신뢰관계인의 피의자 지원근거 강화가 필요하다. 사법복지센터의 확충과 법률복지사 제도 신설의 검토도 필요하며, 법률복지사 제도는 법적분쟁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상담보다 훨씬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복지의 운용 및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복지를 실현하는 공단들의 개선과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현재 검찰이나 법원 내에 상당수의 법률복지 제공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의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법교육을 통해 소송구조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원의 각성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사회적 약자의 건전한 의식증진과도 연계될 것이다. 소송구조제도, 배상명령, 형사조정제도 등의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률복지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사회적 약자, 법률복지, 법률구조, 소송외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 접근성, 사법접근센터, 법률복지사, 법교육

- 목차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b>제2장 법률복지에 관한 일반론</b> .....	<b>4</b>
제1절 사회적 약자의 의의 .....	4
1. 사회적 약자의 개념 .....	4
2. 사회적 약자를 다룬 법령 .....	6
3.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법의식 .....	7
제2절 법률복지의 의의 .....	12
1. 법률복지의 개념 .....	12
2. 법률구조의 발전과정 .....	15
제3절 법률복지 제공 기관 .....	17
1. 대한법률구조공단 .....	17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22
3. 법률구조법인 .....	27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	29
<b>제3장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현행 법제의 검토</b> .....	<b>36</b>
제1절 소송외 지원 .....	36
1. 사법접근센터 .....	36
2. 법률홈닥터 .....	37
3. 마을변호사 .....	40
4. 우선지원창구 .....	41
제2절 소송상 지원 .....	42
1. 소송구조 제도 .....	42

2.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43
3.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 .....	44
4. 신뢰관계인 .....	45
5. 진술조력인 .....	47
6. 장애인 사법지원 .....	50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 .....	52
1. 수사 및 재판과정 .....	52
2. 피해회복과 손해배상 .....	53
<b>제4장 법률복지의 효율성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b>	<b>58</b>
제1절 현행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	58
1. 임의규정으로 인한 추진력 미약 .....	58
2. 접근성 열악 및 지역별 편차 .....	59
3. 제도 활용에 인색한 사법기관 .....	61
제2절 입법론적 해결 방안 .....	62
1. 법령 및 제도 개선 .....	62
2. 법률복지사 신설 .....	67
제3절 운용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68
1. 공단 운영방식의 부분적 재검토 .....	68
2. 지원기관의 접근성 증진 .....	70
제4절 법교육과 제도 활성화 .....	73
1. 교육을 통한 법의식 강화 .....	73
2. 현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 .....	75
<b>제5장 결어 .....</b>	<b>78</b>
참고문헌 .....	81
ABSTRACT .....	86



- 표, 도표 차례 -

<표2-1> 법에 대한 인식 중, ‘법인지 정도’ 응답결과 .....	8
<표2-2> 법에 대한 인식 중, ‘법인식’ 응답결과 .....	9
<표2-3> 법 접근성 중, ‘법률정보 검색 경험’ 응답결과 .....	10
<표2-4> 사회적 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 응답결과 .....	12
<표2-5> 민사 등 법률구조 현황 .....	18
<표2-6> 법률구조공단구조 실적 .....	19
<도표1> 법무보호복지 절차 .....	23
<표2-7> 2016년-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	25
<표2-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요 지원내용 .....	31
<표2-9> 스마일센터의 주요 지원내용 .....	33
<표2-10>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분석 .....	35
<표3-1> 2020년 법률홈닥터 지역별 배치현황 .....	39
<표3-2> 2015년-2018년 전국 지방법원, 소송구조 신청사건 현황 .....	43
<표3-3> 2013년-2018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결정 현황 .....	54
<표3-4> 2010년-2018년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 .....	55
<표3-5> 2013년-2018년 형사조정제도 운용 현황 .....	57
<표4-1> 법교육 필요 여부 응답결과 .....	75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는 유사 이래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건강한 국민의식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빈약한 천연자원의 한계를 벗어나 경제, 문화, 무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국가적 성과를 다수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전후로 우리나라는 문명 수입국이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공급국으로 바뀌었다. 경제 규모와 수준을 살펴보더라도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3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과 5,000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갖춘 국가만 해당하는 ‘30-50클럽’의 7번째 국가로 당당하게 진입하였다.

무수한 한국 제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인이 ‘K-팝’으로 불리는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이른바 ‘K-컬처’ 문화콘텐츠를 찾고 있으며, 최근의 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K-방역’ 시스템을 배우고자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의 2018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국가 간 비교순위에서 상위권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체감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내는 데 성공한 우리 사회의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수험생이 해당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본 상식과 같이 우리 국민 다수는 익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 즉 법률복지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다. 이제껏 주류 사회의 반대 면에 위치하며,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와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실생활에서 권리의 주장이나 옹호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적 장애 및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사법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며, 신체적 장애 때문에 법원 등의 사법기관에 출입이나 이동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 제11조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혼인, 취업, 유학 등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출신 거주자도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중 외국인사건 수는 지난 2005년 7,360건에서 2017년에는 19,77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률제정과 이를 사법현장에서 활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여러 지원방식, 이른바 법률복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의 생애에 있어 주요한 갈림길의 선택과정에서 자신의 의견과 상이한 결정이 진행되는 경우를 그저 바라만 보거나, 혹은 어렵게

1)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7. 13면.

용기를 내어 사법절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근거로 채택되지 않는 사례를 다수 겪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복지는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법률적 정보를 습득하거나 재판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외국인과 이주민,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사법의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구성요소 및 현행 법제의 현재를 다루고자 한다. 즉 이론적 배경요소, 관련 공단과 법인 등 제공기관별 현황, 현행 법제의 검토, 법률복지의 효율성 저해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과 제도 등을 정리·검토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과 실효성 제고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사회적 약자 및 법률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법률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소송 여부에 따른 지원제도의 구분을 통해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와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현재 법률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논문을 살펴보는 선행연구와 현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문헌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학문적 과정을 충실하게 검토하는 기본적인 법학 연구방법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인용하였다. 관련 법제의 국민적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결과 및 달성실적을 다룬 통계자료를 삽입하였으며, 각종 웹사이트와 언론보도 등의 온라인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제2장 법률복지에 관한 일반이론

### 제1절 사회적 약자의 의의

#### 1. 사회적 약자의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란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사회적 약자를 명시한 조문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sup>2)</sup>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본 행정규칙에서는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 사회적 약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은 생애주기별 구분부터 시작하여 여성, 장애인, 저학력, 저소득과 같은 복합적 영역에서의 구분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내용을 다룬 조례를 살펴보면, 2020년 1월에 제정 및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sup>3)</sup>로 정의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본 규칙은 2018년 5월 14일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로서 인권영향평가 실시, 각종 인권 기구의 권고안 검토,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타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항목을 묶어 조항을 재배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다.

3)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징을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이란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 규범을 뜻하는데, 이는 정책의 소망성을 평가할 때 능률보다는 형평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일컫는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sup>4)</sup>

사회적 약자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생존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요구이며, 이에 따라 법률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옹호 및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을 법률적 근거하에 설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뿐 아니라 현장조사, 응급보호, 권리구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사법절차적 기본권의 실효적 향유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절차에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방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구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수인종, 고령 인구,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이 해당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다루는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고인이 70세

4) 박미숙·신의기·김민영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5면.

5) 임성택,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변호사 의무채용”, 「법조광장」, 2017. 1. 12, 기사.

이상인 때,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등의 경우'와 그 맥락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 2. 사회적 약자를 다룬 법령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제27조 제1항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재판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제기 방법 및 주장해야 하는 내용과 증명 방법 등은 고차원의 전문지식이므로 보통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불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 변호사의 법률적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률적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고민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7)</sup>

이처럼 법률의 보호범위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는 자들을 도와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국가는 법률구조법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권보장의 내용이 법률복지의 주요 근거라 여길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에 구분을 두지 아니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간적 존엄과 행복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에서는 권리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제1항을 통해 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6) 박미숙·신의기·김민영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7면.

7) 구분권, “법률구조법 개선방향”,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6, 79면.

8)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국가의 의무를 바탕으로 상세히 구체화하였다. 제34조에서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한 이유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9)</sup>

나아가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법률적 권한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항이 다수 확인된다. 그 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 다른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제7조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제8조에서 언급된 구제 권리 즉,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 3.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법의식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sup>10)</sup>를 정리하여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sup>11)</sup>를 발표하였다. 전국 성인 남녀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별, 소득별, 학력별, 연령별, 주관적 계층 수준별, 지역 규모별 구분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이세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 노인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8, 146면.

10) 본 조사는 국민법의식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및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9년 이전까지는 1991년, 1994년, 2001년, 2008년, 2015년까지 총 5회 진행되었고, 이후의 조사주기는 2년으로 하며, 태블릿pc를 활용한 대상자 개별면접조사방식(TAPI)의 진행이 이루어졌다. 통계청 표준분류 체계에 맞춰 개선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서 조사표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세부 조사항목은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 법의 준수, 법률정보 접근성, 법률서비스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 생활, 법의식 지표, 정부, 국회, 사법부의 신뢰도, 성별, 연령, 소득 등이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klri.re.kr/slc.do](http://klri.re.kr/slc.do)).

11)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본 통계는 응답자의 장애여부나 출신 국가 등 사회적 약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분류가 이루어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별, 연령별, 주관적 계층 구분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범의식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결과 중 몇 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본 항에서 다루게 되는 <표>는 위의 ‘2019 국민범의식 조사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법에 대한 인식

아래의 <표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범 인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반 이상의 응답자인 56.9%가 전혀 모르거나(11.3%) 모르는 편(45.6%)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는 편이거나 매우 잘 안다고 답한 비율(10.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1> 법에 대한 인식 중, ‘범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문항1) 범 인지 정도 “평소에 범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3	45.6	32.7	9.5	0.8
성별	남성	7.8	42.4	36.2	12.3	1.3
	여성	14.7	48.7	29.4	6.8	0.4
학력별	중졸이하	29.3	48	19.5	3	0.2
	고졸	11.1	47.1	32.1	9.3	0.4
	대졸이상	4.6	43.3	38.4	12.2	1.5
경제수준	상	6.7	39.4	31.5	21.4	1
	중	8.5	44.8	36.7	8.8	1.2
	하	16.6	48.9	27.9	6.3	0.4

지역규모	대도시	8.7	43.1	34.9	12.2	1.1
	중소도시	10.1	47.4	33	8.8	0.7
	읍면지역	19.5	48	27.3	4.7	0.5

자료: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의회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177-180면.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응답률이 낮았으며, 학력 수준과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법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2-1>에서 확인되듯이 여성보다 남성이 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치가 높으며,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상승할수록 비례하여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여성, 저학력자,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증거이며, 세계인권선언 제7조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표2-2>와 같이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에 대한 이해 용이성을 묻는 말에 법률용어의 이해는 전체 응답자의 76.2%, 법률문장은 78.4%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법률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2> 법에 대한 인식 중, ‘법인식’ 응답결과 (단위: %)

문항2) 법 인식 “다음 항목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 쉽다”	21.9	54.3	18.2	5.0	0.5
“법률 문장은 이해하기 쉽다”	26.5	51.9	16.6	4.2	0.8

자료: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의회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181-183면.

(2) 법 접근성

<표2-3> 법 접근성 중, '법률정보 검색 경험' 응답결과(단위: %)

문항13) 법률정보 검색 경험 ① “법률 관련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28.2		71.8		
② (검색경험이 있다면) “필요한 법률이나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	28.2	34.3	28.8	4.1
성별	남성	4.1	27.3	33.6	29.9	5.1
	여성	5.2	29.5	35.4	27.2	2.6
학력별	중졸이하	9.3	31.1	33.4	22.8	3.5
	고졸	4.7	32.7	29.5	27.9	5.2
	대졸이상	4.1	25.1	37.5	29.9	3.4
경제수준	상	3.3	19.8	31.7	38.9	6.3
	중	3.1	28.4	37.1	28.4	2.9
	하	6.8	31.0	31.7	25.7	4.8
지역규모	대도시	4.8	26.2	35.1	29.4	4.4
	중소도시	3.9	31.7	32.2	28.7	3.5
	읍면지역	5.0	26.4	36.6	27.4	4.5
문항16) 법률서비스 양적 평가 “법률서비스는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충분치 않다	별로 충분치 않다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7.2	54.4	36.2		2.2

자료: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 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216-229면.

법 접근성을 다룬 <표2-3>을 살펴보면, 법률정보 검색 경험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 13) 결과, 응답자 중 검색해 본 경험은 28.2%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는 법률 정보 검색이 일상 생활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13-1: (법률 정보 검색경험이 있다면), 필요한 법률이나 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으셨습니까?’의 응답결과는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법률정보 검색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고령층,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은 본 응답결과보다도 더욱 정보접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문항16: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는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다루어진 법률서비스의 양적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충분하지 않거나 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합계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양적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법률정보에 대한 검색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70% 이상이 검색경험이 없으며, 검색유경험자들도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의 양적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바라볼 때, 양적 만족도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 (3) 사회적 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

위의 <표2-4>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정리한 내용이다.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순으로 차별을 체험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필요성 인식 부분에서는 ‘장애인 지원법률’, ‘양성평등 지원법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법률’ 순으로 법률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양성평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거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모든 선택항목에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필요성을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위에서 열거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법률들이 부족하다는 방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표2-4> 사회적 약자 차별에 대한 인식 응답결과 (단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18) 차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남성	4.4	26.8	36.2	30.7	2.0
	여성	1.8	13.5	33.2	46.7	4.8
	장애인	1.0	10.0	27.7	53.1	8.1
	성적 소수자	1.2	11.0	27.7	47.7	12.4
	국내거주외국인	1.4	10.3	30.9	51.5	5.9
	북한이탈주민	1.7	11.3	34.7	48.8	3.5
문항19)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필요성 인식 “차별해소를 위해 관련 지원법률이 더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양성평등	1.5	8.9	36.6	46.0	6.9
	장애인	0.7	7.8	32.8	48.4	10.3
	성적 소수자	4.1	14.8	38.9	35.7	6.4
	국내거주외국인	2.1	11.4	36.9	43.9	5.7
	북한이탈주민	1.9	10.2	40.4	42.8	4.7

자료: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232-240면.

## 제2절 법률복지의 의의

### 1. 법률복지의 개념

법률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복지(welfare)란 ‘좋은’의 의미와 ‘상태’를 뜻하는 어원이 합하여 결합된 영단어이므로 인간에게 좋은 또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돕는 행위나 그러한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혹은 방식”<sup>12)</sup>이란 의미가 부여되

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사회복지를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법률복지를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바라본다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회적 약자가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공받는 각종 법률적 제도라고 여길 수 있다.

이처럼 법률복지란 법률구조보다 더욱 큰 범위에서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이며, 원고와 피고 혹은 피의자, 피해자 등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복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법률상담에서부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뢰관계인이나 참고인 혹은 진술조력인, 외국인과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법리진행을 위한 외국어 통역사 및 수화통역사 지원, 그리고 가명조서 및 신변보호조치 등과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호제도 등과 같은 각종 법리적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지원방식들이라 할 수 있다.

법률복지는 법률문제를 물질적 혹은 심리적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전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료복지가 필요한 이치와 같이, 법률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법률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형태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법률복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없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의 개념에 근접하다고 바라볼 수 있다.<sup>13)</sup>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법에서 다루는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12) 김태성·홍선미·조성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2, 19-20면.

13) 황승흠, “한국사회의 민사 법률구조의 이념과 현실”,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2009. 2, 255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는데,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다루었다.

법률구조는 현행 「법률구조법」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며,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법작용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법률구조가 국가의 사법절차에의 접근 및 보편적 복지 개념과 연결되면서,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보충적 수단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sup>14)</sup>

한편으로는 법률구조에서의 핵심은 ‘대상’이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즉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핵심이며 여기에 더하여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까지 그 대상을 개념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확인할 수 있다. 「법률구조법」에서 규정하는 법률구조 대상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로 수렴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이라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가 전달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며, 이는 곧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보호받을 이익이 최소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논리적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법률구조의 대상이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며, 법률구조와 사회적약자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sup>15)</sup>

14) 정해식·김태완·류정희 등,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12, 29면.

15) 황승흠, “한국사회의 민사 법률구조의 이념과 현실”,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2009. 2, 251-253면.

## 2. 법률구조의 발전과정

법률구조가 법률복지의 주요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구조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률구조법의 제정 이전에도 한국의 법률구조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법률구조법 제정 이전부터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제도로써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선임제도’와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제도’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 종교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의해 법률구조 일부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전국적인 조직체계 구성 미비와 운영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그 실효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각계각층에서 정부 주도의 법률구조사업의 필요성이 서서히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1972년 7월 법무부가 정부의 출연금으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된다.<sup>16)</sup>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협회는 설립목적은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자력의 부족, 법률지식의 결여 등 법률상의 구조를 받지 못하는 불우한 국민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어서 법률구조를 하는 일방 법률상담에 의한 권리침해의 사전예방 등으로 국민 누구나가 균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총화형성에 기여코자 함에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들이 겸직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973년에 상담 6,310건과 법률구조 203건, 1983년 상담 130,647건 및 법률구조 1,111건, 1986년 상담 158,203건 및 법률구조 1,538건을 진행하였다.<sup>17)</sup>

16) 김도훈,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9, 98면.

17) 해당 실적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것은 1972년부터 1977년 말까지 6년간 구조완결사건 7,340건 중 약 81%인 6,009건이 제소 전 화해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 1980년 8월 15일에 개최된 제6회 변호사 연수에서 대구회 김영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하는 것은 가정부의 월급을 주지 않거나, 사회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 대개 소액의 소소한 문제들인데, 법무부가 검찰기관을 통하여 해당 인물들을 불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배경으로 만일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어 입건하겠다고 협박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두 번 불러서 지급하라고 하면 순순히 응하게 되는데, 이를 변호사가 하게 되면 기업주 등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건이 장기화되는바, 변호사협회가 이 일을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때,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법률구조의 처리방식은 검사의 권위에 의존한 분쟁 해결이 대부분이었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출처: 구분권, “법률구조법 개선방향”,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6, 82-85면).



법률구조법은 지난 1986년 12월 23일 제정(법률 제3862호)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에 시행하였다. 제정이유로서 “중전의 법률구조는 각종 민간주도의 법률구조사업단체들이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국고보조의 미흡, 임직원의 비전문화, 검찰공무원의 업무겸직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법률구조사업단체들을 육성·발전시키고 민간주도의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규정함.

②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산을 소유하고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기타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법률구조법인은 수수료등의 징수와 법인명의의 대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④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⑤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두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이후 199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을 통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업무준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 3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의 신설과 법률구조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사업대상을 확대하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이전보다 제한하는 등

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sup>18)</sup>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복지증진의 책임 부여와 소송 및 변호사보수 등 발생비용의 국가지원 근거마련,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으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의 설치를 다루는 개정이 2008년에 이뤄졌다.

### 제3절 법률복지 제공 기관

#### 1.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sup>19)</sup>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소송지원은 분야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송구조 요건으로서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 기관에서 출

18) 동법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법 제3조)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법 제21조의2 신설)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 부여(법 제22조의2 신설)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법 제28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국유재산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법 제32조의2 신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제한(법 제35조제1항) 법률구조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

19) 공단의 미션은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이며, 비전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이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2020. 6. 1.자 접속).

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되고 있다. 한편,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후,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이후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를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의뢰자가 공단의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소송구조 진행이 결정된 사건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의 상대측이 임의로 승소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공단은 상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하다.<sup>20)</sup>

다음의 <표2-5>에서 알 수 있듯이, 공단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증가속도는 점차 완화되고 지방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현황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으며, 2019년 지역별 실적은 상반기까지만 반영하였다.

<표2-5> 민사 등 법률구조 현황 (단위: 건수)

연도	합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012	126,898	29,298	32,263	4,635	4,999	8,283	12,892	19,400	5,776	8,000	1,352
2013	136,747	31,535	34,512	4,570	5,178	9,131	13,436	20,612	6,457	9,439	1,877
2014	143,853	23,093	34,620	5,064	5,283	11,245	15,460	20,843	6,820	5,457	1,968

20)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개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outlineOfLitigationStruct.do>, 2020. 5. 8.자 접속.

2015	148,161	34,602	35,881	5,253	5,386	11,693	16,216	21,815	6,268	9,078	1,969
2016	150,088	33,246	38,360	4,716	4,657	11,987	15,707	23,159	6,788	9,358	2,110
2017	149,446	33,056	38,145	4,861	5,282	10,197	15,586	23,626	7,077	9,528	2,088
2018	154,585	33,627	41,038	4,769	5,779	10,903	14,913	23,696	7,087	10,464	2,309
2019	168,039	15,444	21,696	2,530	2,154	5,857	7,539	13,023	3,766	5,874	1,349
※ 지역별: 2019년 1/2(상반기) 실적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현황통계”<sup>21)</sup>, 2019, 2020. 6. 23.자 접속.

그리고, 다음의 <표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공단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외국인과 이주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종전의 <표2-5>에서 나타난 수치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실적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6> 법률구조공단구조 실적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자	민사	10,521	9,549	8,965	9,756	10,116
	형사	412	546	459	365	323
장애인	민사	3,926	1,968	2,233	1,951	1,979
	형사	279	187	166	80	64
한부모가족	민사	5,386	4,751	6,364	6,603	7,442
	형사	-	-	-	-	-

21)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20. 6. 23.자 접속.

범죄피해자	민사	8,166	3,292	3,627	3,632	5,009
	형사	-	-	-	-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민사	1,404	737	604	627	804
	형사	71	41	37	17	17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실적-대상자별 실적”, 2020. 6. 23.자 접속.

이 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인회생과산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상세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공단 내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여러 분쟁을 다루고 있다.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sup>22)</sup>

- ①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②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③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④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를 통해 설치근거를 확보하여 2019년 4월 설립되었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 후 60일 안에 분쟁 조정을 마치게 된다.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그것과 유사하나, 권리금 부분이 추가되어 제정되었다.<sup>23)</sup>

-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2020. 5. 8.자 접속.

2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bcc.or.kr/hp/dar/dispArrGuidanceDetail.do>, 2020. 5. 8.자 접속.

-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③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④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⑤ 권리금에 관한 분쟁
-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조정이 개시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조정의 효력을 살펴보면, 조사 및 심의 조정을 거치고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사이에 금전 등의 지급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해당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공단은 2006년 5월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회생<sup>24)</sup> 및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구조대상자로 하여 법률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② Fast-Track 소송지원<sup>25)</sup>, ③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를 수행하고 있다.

24)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채무자의 장래 수입을 전제하여,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다. 2004년 9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다(출처: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 2020. 7. 4.자 접속).

25)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을 일컬음(출처: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 2020. 7. 4.자 접속).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는 출소자에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일련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법무보호복지는 출소자 지원을 통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 활동이며, 제공방식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법인 등이 법무보호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현재 법무보호복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정책과가 맡고 있고, 사업수행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공법인인 한국법무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공단 외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갱생보호사업자’ 허가를 받아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행하는 몇몇 민간갱생보호법인이 있으며, 법무보호 복지사업의 주된 주체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일본강점기에 ‘사범보호’로 지칭되어 행해졌으며 독립 이후에는 1961년 ‘(구)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갱생보호’로 지칭되면서 갱생보호공단이 갱생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5년에는 당시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구)갱생보호법을 ‘보호관찰법’과 흡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결국 1995년 6월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갱생보호공단은 2007년 대국민 공모를 통하여 공단의 명칭을 제안받아, 2009년 3월 현재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였다.<sup>26)</sup> 현재 출소자 지원 업무를 지칭하는 용어는 법무보호복지와 갱생보호를 혼용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갱생보호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요사업은 숙식제공, 원호지원<sup>27)</sup>, 직업훈련, 기술교육

26) 박경규, “법무보호복지의 현재와 점진적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6. 39-40면.

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가족지원, 허그일자리<sup>28)</sup>, 합동결혼식, 사전상담<sup>29)</sup>, 사회성 향상 교육, 심리상담,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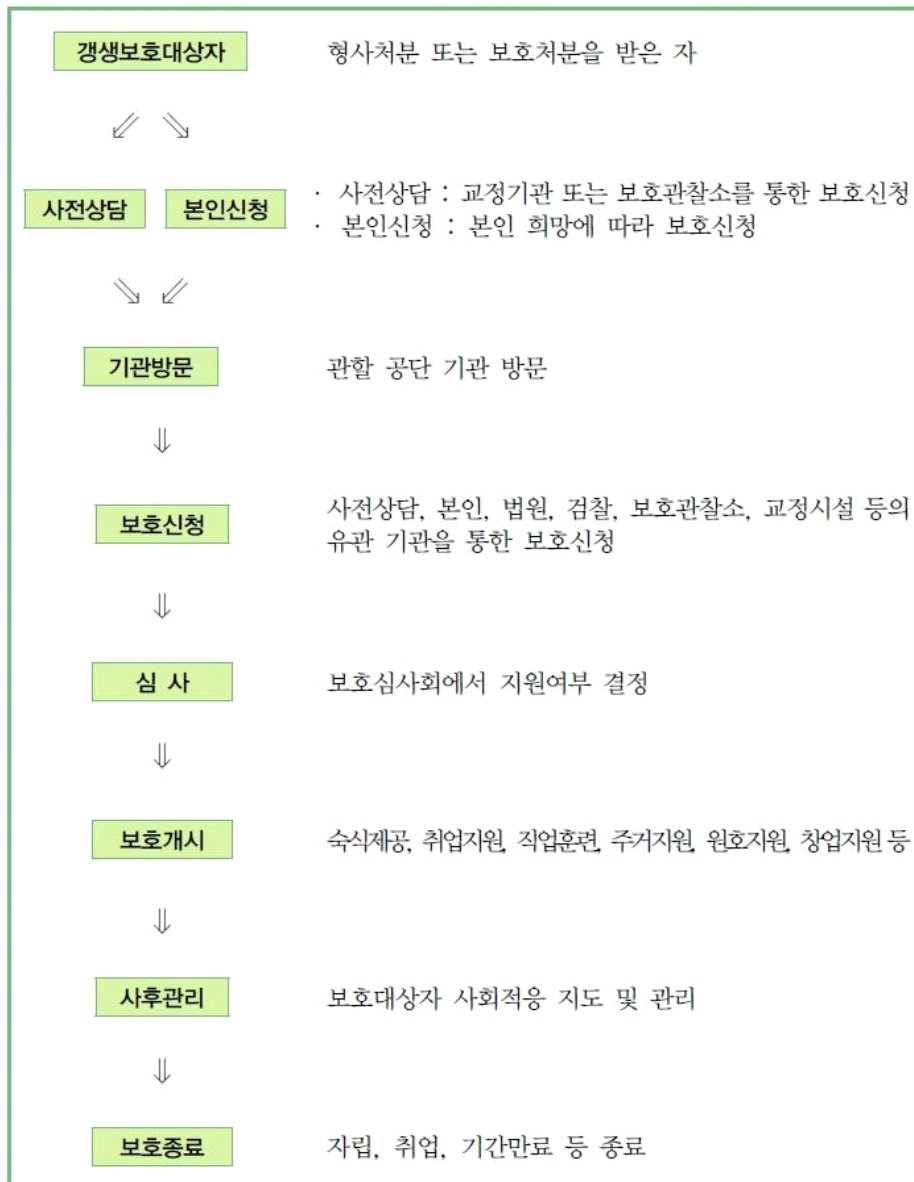
법무보호의 주요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통해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 절차는 다음의 도표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고 있다.

<도표1> 법무보호복지 절차

- 
- 27) 질병과 사고, 실직, 장애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주택 월임차료, 양곡, 생업도구 등의 일시적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출처: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469면).
  - 28)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설계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 ⇒ 4단계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출처: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494면).
  - 29) 출소 1개월 전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출소예정자에게 갱생보호사업을 안내하고 재범 유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출소 전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상담하는 사업(출처: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471면).





자료: 「2019.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9, 465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그 목적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

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이라 명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sup>30)</sup>는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2011년 8월에 새로이 규정하여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하였다.

국민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협력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제65조에서 갱생보호에 관한 제공방법을 상세히 다루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실적은 다음 <표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2-7> 2016년-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8. 4.] 개정 주요내용: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지역 등의 지역 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사업연도	의뢰인원(명)	개시실적(명)	개시율(%)	연간 변동률(%)
계	2018	101,081	97,432	96.4	0.8
	2017	97,723	93,459	95.6	
	2016	83,608	81,076	97.0	-1.4
숙식제공	2018	1,871	1,846	98.7	2.3
	2017	2,249	2,167	96.4	
	2016	2,577	2,273	88.2	8.2
취업알선	2018	3,749	3,687	98.3	-0.3
	2017	4,445	4,382	98.6	
	2016	4,891	4,715	96.4	2.2
창업지원	2018	11	3	27.3	21.9
	2017	56	3	5.4	
	2016	191	14	7.3	1.9
직업훈련	2018	6,200	3,602	58.1	11.7
	2017	6,470	3,003	46.4	
	2016	3,498	2,882	82.4	-36.0
주거지원	2018	200	220	110	75.2
	2017	425	152	35.8	
	2016	602	152	25.2	10.6
원호지원	2018	6,385	6,139	96.1	-0.7
	2017	5,846	5,659	96.8	
	2016	5,567	5,136	92.3	4.5
학업지원	2018	1,280	1,280	100	0
	2017	1,163	1,163	100	
	2016	973	973	100	0
심리상담	2018	11,759	11,759	100	0
	2017	9,322	9,322	100	
	2016	5,103	5,103	100	0
허그일자리	2018	5,856	5,726	97.8	-0.1
	2017	5,776	5,655	97.9	
	2016	5,322	4,997	93.9	4.0

사회성향상교육	2018	3,671	3,671	100	0
	2017	3,863	3,863	100	0
	2016	3,743	3,743	100	0
사후관리 및 멘토링	2018	15,289	15,144	99.1	-0.9
	2017	14,343	14,343	100	0
	2016	12,327	12,327	100	0
사전상담	2018	31,085	30,630	98.5	-1.4
	2017	30,813	30,795	99.9	0.1
	2016	27,325	27,272	99.8	0.1
가족희망사업	2018	467	467	100	0
	2017	437	437	100	0
	2016	386	386	100	0
기타지원	2018	13,258	13,258	100	0
	2017	12,515	12,515	100	0
	2016	11,103	11,103	100	0

자료: 2016.-2018. 3년간 사업실적<sup>31)</sup>을 토대로 연간변동률 삽입 등 재구성

### 3. 법률구조법인

####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며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였다. 이후 1976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공익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77년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부조 사업으로 무료 결혼식을 시작했고, 1988년 법률구조법에 의거 민간단체로는 최초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상담소에서는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서신·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특색사업으로

3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연도별 사업실적, [https://koreha.or.kr/board/list.do?MN1=3&MN2=18&MN3=49&MN=49&BRD\\_ID=S\\_Performance](https://koreha.or.kr/board/list.do?MN1=3&MN2=18&MN3=49&MN=49&BRD_ID=S_Performance), 2020. 7. 5.자 접속.

매주 월요일에 야간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관련 서류 무료 작성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사건까지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sup>32)</sup>

이 밖에도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을 운영 중이며,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해 사회교육사업과 법 교육을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가정파탄을 예방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정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09년 12월 법무부 법률구조법인에 등록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이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1,300여 명의 법률구조수행변호사단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계해 관리하며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본 재단의 설립이념으로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사업을 행하여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법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33)</sup>

대체로 법률구조사업의 내용과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주요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주로 로펌과 변

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소소개, <http://lawhome.or.kr/newhome/sub01/body04.asp>, 2020. 6. 14.자 접속.

33)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재단소개, <http://www.legalaid.or.kr/about/about02.php>, 2020. 6. 14.자 접속.

호사협회 회원들의 기금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경우는 법률구조 대상 사건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재단이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으로 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자는 소송비용 발생 시 생계 곤란하게 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권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국제법상 난민,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그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99년 12월에 법무부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02년 5월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모든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어 가정의 민주화와 평화가 이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 세계의 민주화와 인류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창립 이념으로 설립되었다.<sup>34)</sup>

대체로 타 법인과 유사한 형식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상담원 운영은 주로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통해 운영해나가고 있다. 한편 상담원은 법률개정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법원 전국 설치 운동, 가족법 일부 개정, 법률복지사제도 설치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3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상담원 소개, <http://lawqa.jinbo.net/x/?mid=page102>, 2020. 6. 14.자 접속.

###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조례’에 주로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다룬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은 공통적으로 범죄피해자 상담, 범죄피해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사업, 화해중재 및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법률 지원,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긴급 구호금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한 피해자 등 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집단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범죄피해 현장정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업무처리 등을 위한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35)</sup>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피해자 긴급구호, 상담,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법정 동행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sup>36)</sup>

2003년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집단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피해자지원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김천·구미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간차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뜻을 모으며 2003년 9월 5일 김천과 구미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한편 김천·구미센터가 설립 직후 2003년 대전지역에 설립되었는데, 대전센터는 검찰과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등의 이른바 관이 중심이 되어 설립 추진되

35) 정영훈,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통권29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38면.

36)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http://www.moj.go.kr/hum\\_07/2251/subview.do](http://www.moj.go.kr/hum_07/2251/subview.do)), 2020. 6. 23.자 접속.

있으며 센터 사무실도 검찰청 내에 설치하였다. 사무국장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가 겸직하게 되었으며, 상당수 범죄예방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에 차장검사, 부장, 소년검사 등이 참여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4년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각 청에 피해자지원센터 구축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동년 11월 지원센터 설립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시달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위에서 다룬 김천피해자지원센터와 대전피해자지원센터를 모델로 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대검찰청이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 총 3개월에 걸쳐 전국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54개 지원센터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부산햇살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이 기간에 설립된 대부분의 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의 주도하에 기존의 범죄예방조직을 활용한 관 주도의 형태를 갖춘 ‘대전형’을 주된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무실도 대부분 검찰청 관사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sup>37)</sup> 본 센터의 주요지원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2-8>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요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긴급구호	상담,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정리(청소), 청소지원 등 긴급구호 실시
신변보호	보복 범죄 대비 위치추적장치 지급, 법정 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임시 주거시설 연계
주거지원	임대차보증금 담보·저리대출 지원, 임대주택 연계지원
치료비 지원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관련 의료비지출 지원
심리치료비	임상심리상담사 등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실비 지원

37)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105-108면.



간병비	간병비: 피해자 간병비용 지원 기타 부대비용: 의료보조기구, 원거리 치료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지원
생계비	달리 부양을 제공할 친족 등이 없는 피해자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지원
현장정리비	피해자가 주거, 관리 건조물이 범죄피해로 오염·훼손되어 있는 경우 실비 지원
취업지원비	피해자 본인이 신체·정신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거나, 가족 등 기타 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떠맡게 되어 구직할 때 그 훈련비 등 지원
기타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등 정보제공, 법정 모니터링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http://www.moj.go.kr/hum\\_07/2251/subview.do](http://www.moj.go.kr/hum_07/2251/subview.do)), 2020. 6. 23.자 접속.

## (2) 스마일센터

2005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통합심리 지원을 위해 스마일센터가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치상,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임상심리학자들이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장은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의학전문가가 맡게 된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임상심리사를 중심으로 갖추어진 심리지원팀과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와 사회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을 맡는 사례지원팀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sup>38)</sup>

38) 김태경,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와 심리지원 현황”, 201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8, 1면.

본 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 동부, 서울 서부, 부산, 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대전, 대구, 춘천, 전주, 청주, 울산, 창원 등 전국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센터의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스마일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요 진행업무는 다음의 표와 같다.<sup>39)</sup>

<표2-9> 스마일센터의 주요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사례관리	구조금 지원, 경제적 지원, 신변 보호, 지자체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통합 사례관리 지원, 기타 관련 기관과의 사례 연계 및 지원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후유증의 정도와 예후 등 평가 및 치료
심리평가	피해자 심리상태 이해 및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 정서평가, 인지기능 평가, 종합심리평가 등 평가
심리치료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안정감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범죄피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분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 및 입소 프로그램을 제공
법률지원	수사 및 재판 진행 정보, 법정 증언 준비, 관련 서류 제출

39) 스마일센터-센터 소개, <http://resmile.or.kr/pages/?p=2>, 2020. 6. 23.자 접속.

	등, 사건 이후의 법적 처리에 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지원	지역 내 교육, 복지, 유관 기관을 연계
사후관리	정기적인 사후관리 제공
회복프로그램	유사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원예치유, 난타, 명상요가, 숲 체험, DIY 활동, 사이코드라마,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회복

자료: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가 하는 일, 서비스 안내”  
(<http://resmile.or.kr/pages/?p=8>) 토대로 재구성, 2020. 5. 4.자 접속.

### (3) 범죄피해자 지원 이용자 분석

다음의 <표2-10>은 지난해 전국의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총 110개 기관의 이용자 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중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주요 이용자는 여성으로 전체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관 이용 연령분포를 확인한 결과 20대부터 40대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 분석결과 100만 원 이하 이용자가 27.5%, 100만 원 이상 199만 원 이하의 이용자는 34.2%로 합계 61.7%를 점유하고 있다.<sup>40)</sup>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저소득층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주요대상이며, 이는 곧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자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 적절하게 유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법무부, 「2019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2019. 12, 29-30면.

<표2-10>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분석 (단위: %)

분야	구분	비율
범죄피해 경험 여부	피해 당사자	75.1
	피해자 가족	24.8
성별	남성	24.4
	여성	75.3
연령	10대	6.8
	20대	19.8
	30대	19.5
	40대	24.8
	50대	16.0
	60대 이상	11.8
월 평균소득	100만 원 미만	27.5
	100-199만 원	34.2
	200-299만 원	21.6
	300만 원 이상	14.9

자료: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2019. 12, 29면, 부분 재구성.

## 제3장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현행 법제의 검토

### 제1절 소송의 지원

#### 1. 사법접근센터

2018년 9월 4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은 “사회경제적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법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외국인·이주민 등도 사법 서비스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 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sup>41)</sup>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하여 설치된 사법접근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에 의한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창구 등 그동안 법원이 제공하여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별 지방변호사회, 지역별 법무사회 등의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41)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방안 등 의결”, 2018. 9. 4, 대법원 보도자료.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단순히 법률소송에 한정된 고민을 갖기보다는, 그 외에도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가정 내 관계 형성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법원 방문 이후에도 다시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의 불편과 불합리를 막을 수 있도록 센터 내에서 타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사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구조를 갖추어 법률상담과 더불어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사법접근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2.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직접 채용한 변호사가 각 지역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었으며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복지서비스의 이미지가 ‘기다리는’, ‘일시적’이고, ‘소송구조 중심’이었다면,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진배경으로 기존 법률복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소송구조에 집중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원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나 소송수행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타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sup>42)</sup>

42) 법률홈닥터-소개,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1.do>, 2020. 6. 23.자 접속.

본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 등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법률홈닥터)가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와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2011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배치를 시작으로, 2014년 5월 40개 기관, 2017년 5월 60개 기관, 그리고 2020년 현재 65개 기관에 65명의 변호사를 배치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다.<sup>43)</sup>

법률홈닥터의 주요활동<sup>44)</sup>과 현재 배치기관 현황<sup>45)</sup>은 다음과 같다.

- ① 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 전국 10개 권역별 변호사단 정비, 각 권역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에 대한 법률홈닥터 서비스
- ② 관계부처 협업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 발굴 및 지원: 가족관계 미등록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 발굴, 가족관계 등록 및 복지제도 연계
- ③ 주택공사 연계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법률상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제공
- ④ 취약계층 집중연계 지원: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를 발굴하고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계하여 지원
- ⑤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 활동: 대구서문시장화재, 여수수산시장화재, 포항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현장법률서비스 제공, 이민자 가정, 추석 전 체불임금사건 지원 등 법률서비스 제공

43) 법률홈닥터-연혁,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2.do>, 2020. 7. 10. 자 접속.

44) 법률홈닥터-주요활동,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2.do>, 2020. 6. 23.자 접속.

45) 법무부-인권보호제도, <http://www.moj.go.kr/moj/2154/subview.do>, 2020. 7. 5.자 접속.

<표3-1> 2020년 법률홈닥터 지역별 배치현황

권역	배치기관			
서울 13개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양천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랑구청
	서울 사회복지협의회			
인천, 경기도 15개	인천 강화군청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서구청	인천 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 덕양구청	광명시청	광주시청	남양주시청
	동두천시청	성남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오산시청	이천시청	수원 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 / 3개	삼척시청	속초시청	태백시청	
대전, 충청도 8개	충주시청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대전 동구청	대전광역시청
	논산시청	서산시청	아산시청	천안시청
광주, 전라도 8개	익산시청	전주시청	전북 사회복지협의회	광주 광산구청
	광주 남구청	광주 서구청	순천시청	전남 사회복지협의회
대구, 경북 8개	대구 달서구청	대구 동구청	대구 북구청	대구 수성구청
	경산시청	구미시청	영주시청	포항시청
부산, 울산, 경남 9개	부산광역시청	부산 남구청	부산 사상구청	부산 수영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울산광역시청	경남도청	진주시청
	창원시청			
제주 / 1개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법무부-법률홈닥터(<http://www.moj.go.kr/moj/2154/subview.do>), 2020. 6. 22.자  
 접속.



### 3.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에게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맺어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간편하게 법률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형태이며, 본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2013년 3월 당시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었으며<sup>46)</sup>, 전국 시·군 158곳 중 70곳이 무변촌인 관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조언 등 일차적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2013년 6월 7일 기준, 전국 489곳 중, 마을변호사 신청을 한 지역 246곳에 총 414명의 마을변호사 위촉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sup>47)</sup>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무변촌 제로(ZERO) 달성’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 언론홍보를 진행하였다.<sup>48)</sup>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마을변호사는 개업변호사가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변호사 접촉도가 낮은 지역의 마을 주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정된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46) 2020. 6. 31. 기준, 이와 비슷한 수치의 변호사 수도권 집중도가 현재까지도 비슷하게 비율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28,582명 중 개업변호사는 23,417명이며 이 중 80.5%인 18,845명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출처 법무부-법무정책서비스, <http://www.moj.go.kr/moj/285/subview.do>, 2020. 7. 18.자 접속)

47) 법률저널, “전국 246곳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414명 위촉”, 2013. 6. 7, 보도자료

48) 법무부,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개최 - 무변촌 제로달성, 마을변호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2019. 12. 17, 법무부 보도자료.

절차를 안내하며, 자율적으로 마을 방문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국적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외국인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한 소통형식의 급격한 증가에 빠르게 대응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본 제도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담 후 소송 등의 법률구조 진행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거나 상담내용을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 3,281개의 읍, 면, 동에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2개 읍, 면에 총 4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다.<sup>49)</sup>

#### 4. 우선지원창구

대법원이 2014년부터 각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2018년까지 13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 25명의 민원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광주가정법원에 추가 개설하였다.<sup>50)</sup>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사 상담 등의 사법지원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명령 인식 프로그램 및 독서 확대기 구비, 청각·언어장애인이 활용 가능한 통역용 화상 전화기 등을 배치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설치하였다.

49) 법무부-마을변호사 배정현황, <http://www.moj.go.kr/moj/312/subview.do>, 2020. 6. 25.자 접속.

50)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V.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2019. 9, XXXI면

대법원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5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를 신설할 예정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민원상담을 우선지원창구가 전담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법부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51)</sup>

## 제2절 소송상 지원

### 1. 소송구조 제도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만한 경제적 여건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송구조의 대상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해당한다. 본 제도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 중 당사자, 자연인, 외국인,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소송구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무자력이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소송비용을 지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그 후, 승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따르며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sup>52)</sup>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선임 명령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보수, 그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선임하는 변호사의 보수도 구조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급이 유예된다. 한편, 구조결정을 받는다는 것은 비용의 지급을 유예받는 개념이며 비용 면제의 개념이 아니므로, 구조를 받는 당사자가 종국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

51) 법률신문뉴스, “고양지원·평택지원,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소”, 2019. 10. 28, 법률신문뉴스 보도 자료.

52)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소송구조제도, [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 2020. 7. 10.자 접속.

재판을 받았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못 받을 때는 국고에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유예 되는 송달료를 포함한 예납금은 실제로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 지급한다. 해당 법원사무관은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분임재무관에게 그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소송구조의 부여는 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여의 효력은 소송을 승계한 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sup>53)</sup>

2015년부터 최근 4년 내 이뤄진 소송구조 제도의 신청 및 인용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2> 2015년-2018년 전국 지방법원, 소송구조 신청사건 현황 (단위: 건, %)

연도	신청(건)	인용(건)	인용비율(%)	본안직권소송구조(건)
2015	9,666	6,244	64.8	772
2016	7,952	4,315	54.3	906
2017	6,330	2,890	47.1	654
2018	5,999	2,906	49.0	296

자료: 법원행정처, 「2016년-2019년 사법연감, 제5장 통계(사건의 개황)」.

## 2.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200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본 제도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이다. 본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의 고령, 등록장애인 등이 해당한다.<sup>54)</sup>

53) 국가인권위원회, “적극적 인권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연구”,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 공모, 2010, 17면.

54)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였으나, 2018년부터 법원 직권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진행 혹은 종료 후 상환능력이 생기는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구조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납입해야 한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지원받는 범위는 ①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②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③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④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⑤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등이다.<sup>55)</sup>

### 3.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피고인의 경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이 바로 본 제도이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 국가의 비용으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크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와 피고인 및 피의자의 청구를 기다리는 경우로 나뉘는데 전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 칭하고, 후자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청구 국선변호인 선정’이라고 명하고 있다.<sup>56)</sup>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변호인이 없을 시에는 법원이 직권으

---

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도 해당된다.

55) 서울회생법원-도산제도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e.jsp](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e.jsp), 2020. 5. 1.자 접속.

56) 대한법률구조공단-각국의 법률구조제도,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RescueEachCountry.do>, 2020. 4. 20.자 접속.

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으로 「형사소송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삼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③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④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⑤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으며,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변호인의 사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나,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동일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국선대리인 제도’<sup>57)</sup>가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의 국선변호인’이라는 대입이 가능하다. 선임기준도 국선변호인의 기준과 유사하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만 있었으나, 2018년부터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4. 신뢰관계인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장애인,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

57)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청구인이 변호사 자신이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우리나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출처: 헌법재판소-알기쉬운 헌법재판,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justice/govchoosenDeputySystem.do>, 2020. 7. 12.자 접속.).

진술 및 증언 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하는 경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그리고 당사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다. 더욱이 장애인이거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는 더욱 그 체감되는 정도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진술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의 피해과정에 대해 수사관 등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사법기관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곳이 아니므로, 공간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해 애써 준비해온 내용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수의 현행법령에서 본 제도의 필요성과 실행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는 심신의 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조사대상인 경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동석도 가능하다.

현행 특별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다루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신문에서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도록 할 의무부여가 명시되어 있으며(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sup>58)</sup>의 직원이나 그

58)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며,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적절한 발달을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조사 시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221조 제2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신뢰관계자를 피해자의 시야 범위 밖에 배석하도록 하며, 동석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신뢰관계자가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의 퇴거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59)</sup>

## 5. 진술조력인

다양한 범죄 중, 성폭력범죄는 목격자의 부재 및 은밀한 수법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직접적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피해 당시의 특정한 사항 즉 범죄피해 일시와 횡수,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로 인해 가해자는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여 유무죄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

---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임(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020. 2. 5면).

59) 박미숙·신의기·김민영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178-179면.



년자와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형사사법 절차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그들의 부족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sup>60)</sup>

이처럼 진술조력인이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은 자신이 겪었거나 목격한 내용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환경이나 조사자의 질문방식 혹은 피조사자의 특성에 대한 사전정보 정도, 보호자의 사건 해결에 대한 지원 의지 정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진술의 양과 질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 부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에서 기술한 사회적 약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과 같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sup>61)</sup>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중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에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에서부터 수당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62)</sup>

진술조력인이 지원하는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60) 김원아·한영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8호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6, 96면.

61) 김창균·김유정,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법과 정책」 제24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86-87면.

62) 김원아·한영수, 전제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99면.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하는 피해자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사전평가 후, 조사 또는 증언방법을 피해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지원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중개가 이루어진다. 본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도 맡는다.

마지막으로 진술조력인은 조사 후 면담 및 조사 중의 관찰내용을 토대로 ‘진술조력인 보고서’<sup>63)</sup>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

본 절에서 다룬 신뢰관계인은 수사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과 같이 별도의 신뢰관계인 자격 여부를 법령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진술조력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 해당하는 인력 중 선발을 진행한다.

- ①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③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이후 진술조력인 양성 과정에서 교육 참가자는 사법절차 과정, 아동·장애인

63)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행동 관찰, 전반적 인지 기능, 언어 이해능력, 언어 표현능력, 집중력, 발음 명료도, 읽고 쓰는 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정서 상태, 개인의 심리적 특수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출처: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5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실습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고 연 1회 보수교육을 참가해야 하며 진술조력인 명부를 통해 상시 관리하기에 이른다.<sup>64)</sup>

## 6.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법기관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나 수화통역사 등 지원 인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적 가치를 장애인 사법 지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sup>65)</sup>

소송절차에 참여하면서부터 본 제도의 지원범위에 자동으로 해당이 되며, 장애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법원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소송절차에 원고, 피고 외에도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를 판단 시 장애의 원인이나 장애유형의 분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개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장애유형이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모든 장애인이 사법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64)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법절차 과정 2.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 과정 3. 실습 과정 ②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5)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7. 13면.

장애인은 아니나 사법접근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해당하는 상황도 있다.<sup>66)</sup>

「민사소송법」 제143조에서 명시하는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 혹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해당한다. 그리고 수화통역인 등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에는 감정인 기피신청에 관한 동법 제33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역인에 대한 기피에 관한 준용 규정(형사소송법 제25조)을 두고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sup>67)</sup>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6조 제5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서 법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응당한 권리를 명시한다. 동법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의 장애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안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본 제도의 신청할 권리를

---

66) 한 예로, 안면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다. 그러나 안면장애로 인해 수반하는 의사소통 제한 등의 다른 장애가 없는 한 별도의 사법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귀가 안 들려서 청각이 완전 혹은 부분 손실된 경우에는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지속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접근하기 위한 사법지원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행정처(출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7.)는 일례를 명시하고 있다.

67) 법원행정처, 전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38면.

강화하고 있다. 본 제도의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 및 구두로도 가능하게 된다. 법원은 본 제도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는 신청서를 편철하며, 신청서 미제출시에는 변론 등 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sup>68)</sup>

###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

#### 1. 수사 및 재판과정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특성과 상황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제도, 국선변호사 지원,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조서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가명조서 제도는 범죄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 및 사건자료 제출,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과 관련하여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에 의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sup>69)</sup>

재판과정 및 형 집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판절차 상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68) 법원행정처, 전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38-39면.

69)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http://www.moj.go.kr/hum\\_07/2227/subview.do](http://www.moj.go.kr/hum_07/2227/subview.do), 2020. 6. 23.자 접속. 이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이며,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득한 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도 제공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사건처분결과, 공판 개시, 재판 결과, 구금 상황, 출소,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 피해회복과 손해배상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피해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피해에 대한 회복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로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 발생 시에는 ‘형사조정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게 되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이며 부상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단,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sup>70)</sup>

최근 6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신청과 지급률은 다음의 <표3-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70)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http://www.moj.go.kr/hum\\_07/2237/subview.do](http://www.moj.go.kr/hum_07/2237/subview.do), 2020. 6. 23.자 접속.

<표3-3> 2013년-2018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결정 현황 (단위: 건, %)

연도	신청건	지급결정건	지급결정율	부지급결정건	부지급율
2013	397	312	84.8	56	15.2
2014	437	331	87.6	47	12.4
2015	454	382	91.8	34	8.2
2016	353	279	87.7	39	12.3
2017	326	264	91.0	26	9.0
2018	304	248	92.5	20	7.5

자료: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범죄백서」, 제4장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 동향, 부분 재구성.

이 밖에도 피해자가 일정한 소득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이 곤란하거나 기존 주거에서의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 등을 연계하는 주거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배상명령에 해당하는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7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배상명령의 개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2020. 6. 23.자 접속.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로 제한된다.<sup>72)</sup>

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배상’으로 한정되었으나, 이후로는 위자료도 포함되고 있다. 즉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해당하며, 손괴의 경우는 그 수리비,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해당된다.<sup>73)</sup>

<표3-4> 2010년-2018년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천원)

연도	신청	인용	인용률	직권	배상명령액
2010	4,465	1,407	33.0	-	111,004,919
2011	5,877	1,610	30.9	-	68,719,308
2012	6,548	2,269	35.7	-	69,102,211
2013	6,851	2,001	31.5	-	118,704,161
2014	6,054	1,899	30.8	-	146,991,095
2015	6,894	1,839	29.3	-	98,360,078
2016	9,447	2,298	25.6	-	64,969,253
2017	8,961	2,771	32.3	-	60,800,267
2018	10,046	3,775	41.1	-	66,968,409

자료: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범죄백서」, 제4장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동향, 부분 재구성.

72) 검찰청 홈페이지-배상명령, <http://www.spo.go.kr/site/spo/02/10211020500002018100812.jsp>, 2020. 6. 23.자 접속.

73)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배상명령,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2020. 7. 9.자 접속.



위의 표는 배상명령사건의 신청과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6년에 대폭 증가한 이후 2017년에 잠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용률은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직권을 통한 배상명령제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발생하는 경우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고소사건 등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주 대상이다.<sup>74)</sup>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 ④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었지만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수사 위주, 처벌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74) 검찰청 홈페이지-형사조정,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600002018100812.jsp>, 2020. 6. 23.자 접속.

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그러나 다음의 표 ‘형사조정제도 운용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형사조정제도 의뢰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의뢰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3-5> 2013년-2018년 형사조정제도 운용 현황 (단위: 건, %, 명)

연도	전체 사건	형사조정 의뢰건	의뢰율	형사조정위원 수
2013	1,852,437	33,064	1.8	2,310
2014	1,813,508	54,691	3.0	2,431
2015	1,950,674	87,272	4.5	2,543
2016	2,064,407	111,012	5.4	2,817
2017	1,870,448	118,113	5.5	2,868
2018	1,750,330	117,014	5.5	2,859

자료: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2020, 206-207면, 부분 재구성.

75) 검찰청 홈페이지-형사조정, <https://www.spo.go.kr/site/spo/02/10211020600002018100812.jsp>, 2020. 6. 23.자 접속.

## 제4장 법률복지의 효율성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 제1절 현행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 1. 임의규정으로 인한 추진력 미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낯설고 생소한 공간에서, 법적 권위를 갖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촉될 수 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인 정신적 장애인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빠르게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어, 이들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미란다원칙도 단지 무의미한 보호제도일 수 있다. 장애인들이 갖는 이와 같은 내재적 취약성은 형사 사법절차가 가장 중요시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저해만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sup>76)</sup>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 동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애 정도와 같은 ‘심신의 상태’와 연령 등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경우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76)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0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0, 606면.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수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다룬 동법 제244조의5에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다. ‘①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②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처럼 장애인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동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동석요청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칫 앞에서 언급한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경우도 유사한 형국이다. 근거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은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 2. 접근성 열악 및 지역별 편차

현재 법률복지 제공기관이 검찰청 등의 사법기관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살펴보더라도, 59개 센터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센터는 지역별 검찰청 내 위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sup>77)</sup> 검찰청에 위치함으로 인해, 센터운영비 감면 등의 부분적 혜택은 열악한 운영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역별 지부와 출장소도 현재 상당수는 사법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 검찰청 내부에 상주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청 등의 사법기관을 방문함과 동시에 조사 참여 과정의 부정적 기억이 떠오를 수 있고, 범죄피해 당시의 감정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77)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http://kcvc.kcva.or.kr/page/center\\_find.php?ccode=&page\\_idx=38&category\\_idx=70](http://kcvc.kcva.or.kr/page/center_find.php?ccode=&page_idx=38&category_idx=70), 2020. 6. 23.자 접속.

충분하기 때문에, 법률복지 수혜자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님은 분명하다. 사법기관 내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함이 대부분인 실정이므로, 매우 섬세한 피해사건상담에 필수로 요구되는 ‘전문상담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그 밖에도 법률복지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 저하도 우려될 수 있어, 법률복지 제공기관들의 ‘접근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공기관 위치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지역별로 상이한 제공기관의 설치 여부로 인해, 법률복지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서울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2012년 부산, 2018년에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과 청주, 울산에 설치되었고, 가장 최근 설치된 지역은 이듬해인 2019년에 창원스마일센터로서 2020년 현재, 전국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sup>78)</sup> 현재 센터가 부재한 지역은 충남, 제주, 세종, 전남, 경북이며, 이 지역의 신속한 스마일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스마일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하여 심리치료,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센터 미설치지역의 법률구조 수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단 법률 접근성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 외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란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sup>79)</sup> 법률복지도 그와 상이하지 않아, 대도시 위주로 복지서비스가 구성되고 제공되어 있어, 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은 자명한 일이다.

78) 스마일센터-설립배경 및 현황, <http://resmile.or.kr/pages/?p=2>, 2020. 6. 23.자 접속.

79)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나 등록 인구, 기업,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특히 3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이며, 이를 위한 시행전략 중 첫 번째는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으로 결정되었다(출처: 안성모·공성윤, “수도권-비수도권, 두 개의 대한민국”, 『시사저널』, 2020. 2. 4. 기사).

### 3. 제도 활용에 인색한 사법기관

법률복지의 실천이 가능하게 돕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지가 낮아 아쉬운 점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다룬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들은 지원받은 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14.3%)과 심리치유서비스(11.4%) 순으로 나타났다.<sup>80)</sup> 이처럼 법률복지 수혜자들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높은 데 비해, 이를 지원하는 관련 제도의 수행실적은 미비하여,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제3장 제2절의 ‘소송구조’에서 다룬 ‘<표3-2> 2015년-2018년 전국 지방법원, 소송구조 신청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신청이 줄고 있고, 인용률도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송구조의 취지가 ‘소송비용 지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용지원’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아쉬운 수치임이 분명하다.

특히 50%에 미치지 못하는 소송구조 인용률과 그마저도 연간 꾸준한 내림세임이 확인되는데, 법원은 이에 “소송구조 예산이 부족하여 재판부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구조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81)</sup>

그리고 배상명령과 관련하여, 앞에서 다룬 <표3-4> ‘2010년-2018년 배상명령 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청은 지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데 비해, 인용률은 3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법원의 직권을 통한 배상명령제도는 현재까지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

80) 법무부, 「2019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67면.

81) 이승윤, “법원 소송구조 3년 새 30% 감소. 인용률도 50% 불과”, 「법률신문」, 2018. 10. 10, 기사.

다.

‘형사조정’ 의뢰 실적에서도 아쉬움이 따른다. <표3-5>는 최근 6년간의 형사조정제도 운용을 분석한 내용인데, 이에 따르면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13년의 33,064건에서부터 2018년의 117,014건으로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사건 중 형사조정에 의뢰된 비율(의뢰율)은 2013년에는 1.8%이며 집계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5.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의뢰율은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지만, 아주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 제2절 입법론적 해결 방안

### 1. 법령 및 제도 개선

#### (1)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수입료 및 평가방식 개선

과거의 국선변호인은 민간변호사가 간간히 국선변호를 몇 건 맡아 수입하는 형식이었으며, 2004년 시범실시 후 2006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이 시기부터 국선변호인제도가 체계화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성을 지님에 따라 변호사는 연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중사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국선변호 활동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이 정하는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변호사는 국선변호 및 각종 법률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빈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하여 공익봉사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사선변호인과 같은 보수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변호사 시장은 과거 개업만 해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없던 시기와 매우 달라, 전국 변호사의 수가 약 3만 명<sup>82)</sup>에 달하

고 있고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sup>83)</sup>.

국선전담변호사는 1회 위촉 시 2년간 활동하며, 보수는 세전 월 600만 원,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 후 (세전)월 8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은 사건당 4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변호사가 수임하는 여타 사건에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 건에 비교해 매우 적은 급여의 국선변호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론 “국선변호 중에는 단순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건의 난이도에 보수를 차등화하지 않는다”<sup>84)</sup>라는 사건별 난이도에 따른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선변호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방식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가 배속 재판장에 의해 이뤄지고 위촉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임과 평가가 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의견이 최근 대두되기도 한다. 국선변호인은 자신이 수임한 일반사건과 국선사건 모두를 변호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사건만 변호하는 변호사로 공무원에 해당한다.<sup>85)</sup>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재판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고, 이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지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sup>86)</sup>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사법부의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판사임용에 법조경력 필수인 점을

82) 2020. 6. 31. 기준, 법무부가 발표한 월간 변호사현황에 따르면 전국 28,582명이 변호사로 등록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121명(제주시 113명, 서귀포시 8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moj/285/subview.do>, 2020. 7. 18.자 접속).

83) 정영훈,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정의」 제479호, 2019. 2, 106-107면.

84) 박경준, “국선변호인제도, 피고인 손에 대등한 무기를”, 「서울대학교대학신문」, 2019. 11. 24, 기사.

85) 박병탁,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앞서 국선변호인제 개선해야”, 「대한민국국회 ‘국회뉴스ON’」, 2019. 1. 10, 기사.

86)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제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중의 상당수가 판사임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나중에 경력 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은 판사에게 원만한 인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의 평가가 변호사가 배속된 재판장에 의해 이뤄지고, 그 평가가 위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sup>87)</sup>이 대두되기도 한다.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사건 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2) 진술조력인: 지원근거 개정 및 상근인력 증원

2019년 11월 기준, 현재 진술조력인은 약 100명 정도가 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2017년 12명, 2018년 13명, 2019년 15명 등 매년 10명 내외의 신규인력을 선발하고 있다.<sup>88)</sup>

일부 지역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진술조력인이 부재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타지역의 진술조력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성을 통한 진술조력인의 수적 증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정예산을 확보 후 지역 내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진술조력인의 확보는 곧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보다 양질의 지원’과 비례하게 됨은 분명하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의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sup>89)</sup>, 임의적 이용제도에서 필수적 이용제도로 바꾸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sup>90)</sup>

87) 박경준, “국선변호인제도, 피고인 손에 대등한 무기를”, 「서울대학교대학신문」, 2019. 11. 24, 기사.

88)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확대”, 2019. 6. 20, 정책실명 공개과제.

89)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은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증인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3) 신뢰관계인: 피의자 지원근거 개정

현행법령은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 피해자의 경우와 피의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수사기관과의 장시간 수사 중 심리적 압박을 체험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편의시설 및 의사소통 지원 등의 요청함에서도 이를 묵살하게 될 가능성이 피해자의 경우에 비해 높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변호인 참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통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생략하거나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 진행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등 보조인의 참여를 유명무실화하게 된다면 장애인이 갖는 본래적 취약성은 그대로 수사절차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노출되고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약점으로 발생하며, 자칫 엄정한 수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sup>90)</sup>

그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근거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 여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사기관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고 평소보다 자기방어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장애인의 경우는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우 피의자신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위 조항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90) 김창균·김유정,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법과 정책」 제24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102면.

91) 이기수,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0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0, 606면.

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게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를 피해자의 경우와 똑같이 강행규정으로 다루어, 형사소송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sup>92)</sup>

현행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다룬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sup>93)</sup>와도 충돌되는 상황이다. 제26조 제6항에서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지원제도의 수혜 가능함과 조력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의규정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실천하기에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의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의 제공을 통하여 위 법률이 실현되도록 하는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론의 관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정도의 구분을 ‘장애정도가 심한 자’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처럼 두 분류로 구분하여 행정사무 진행 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현행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삽입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해야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92)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3)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법률복지사 신설

최근의 법률복지 패러다임은 과거의 ‘소송’에서 벗어나 ‘소송의 예방 혹은 방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 법률구조의 출발점인 법률상담을 이러한 소송 예방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제공할 때 단순히 법적 정보의 단순제공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상담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법적 분쟁에 있어 주요 쟁점은 경제적 이윤추구보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와 같은 복지적 목적이 다수일 것이다. 이 때문에 법률복지에 관한 상담은 단순 법리적 검토나 변호사 연계만이 아닌, 그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상담까지 그 개념 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법률복지사’ 혹은 ‘법률상담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률상담의 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는 구별되는 법률상담사를 신설하는 것도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위의 법률복지사 내지 법률상담사에게만 허용하는 법률복지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자격을 신설하여 법률상담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담사에게만 법률상담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만 법률상담을 허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자격 취득자 이외에도 관련 상담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sup>94)</sup>

법률복지사 혹은 법률상담사는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 외에도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기술이나 실습 등에 대한 상당량의 훈련이 필수일 것이다. 이는 법률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sup>95)</sup>

94) 양천수, “법률구조 서비스의 내용으로서의 법률상담 서비스의 조직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214면.

95) 황승흠,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102면.

### 제3절 운용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1. 공단 운영방식의 부분적 재검토

#####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독점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법」이 사실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 주를 이뤄 본 공단을 거쳐야만 진행이 수월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과점은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법률복지 수급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고소사건의 양측 모두 법률복지수급권 행사자일 경우 일방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때 다른 일방은 도움을 받을 곳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공단 외에도 여러 민간 법률구조단체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다양한 법률구조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법률구조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근거 법률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법률구조단체 등을 지원하여 법률구조를 폭넓게 확대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sup>96)</sup> 공단의 독과점이 아닌,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실현되는 법률복지는 수혜자들에게도 선택지의 다양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체감만족도 증대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소송대리 및 형사변호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구조공단이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삼는 경계는 중위소득의 125%로서, 이는 2020년 현재 2인 가구의 경우 월 3,740,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5,93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층, 150%를 상류층으로 설정할 때, 125%는 중산층으로 잡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소득기준인

96) 구분권, “법률구조법 개선방향”,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6, 103면.

중위 125%라는 설정은 곧 공단업무 과중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97)</sup> 공단은 중위소득의 80% 이하는 전액 무료로 소송구조를 진행하며, 중위소득 125% 이하는 인지 및 소정의 보수 명목의 실비를 받고 있다. 현행보다 엄격한 구조대상 기준액의 상향을 통해, 소송구조 대상의 확대보다도, 현재의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공단의 질적서비스 강화와 타 민간법률구조법인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농업인과 어업인은 ‘중위소득 150%’의 경우에도 구조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공단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이들 기관이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민, 어민, 축산인에게 무료로 민·가사 소송대리를 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sup>98)</sup> 그 대가로 농협으로부터 지속적인 출연금을 받고 있고 그 누적액이 2015년 기준으로 19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농협, 수협과 포괄적 수입계약을 체결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도 간주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공기관이 외부 기관과 이러한 형태의 교류를 하는 것이 적절한 진행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절반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하며, 이 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임은 분명하지만, 지원금으로 인해 공단의 출범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취지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겠으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어촌지역 내 유력인사도 소송구조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재력가나 권위자도 공단의 구조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연결고리가 없거나 정보가 없는 진정한 약자들은 오히려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sup>99)</sup> 법률복지의 제공과정에 있어 더욱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들에게 정량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97)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과도한 업무량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서비스 혜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출처: 신종철, “박주민-법률구조공단 소송사건 급증 업무 과중. 법률서비스 저하 우려”, 「로리더 법률뉴스 창」, 2018. 10. 21. 기사).

9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건의 채무자), 임금 등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은 소득 제한 없이 법률구조 대상으로 선정된다.

99)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7. 12. 14, 15면.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다룬 <표2-7> ‘2016년-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실적을 살펴본 결과, 아쉬운 부분은 창업지원 사업과 주거지원 사업의 의뢰실적, 개시실적, 개시율 모두 저조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인 창업지원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안정적인 주거지의 확보는 비단 출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인간 모두의 사회적 안정성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출소자는 그렇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8배 정도 낮다는 결과<sup>100)</sup>를 감안한다면, 해당 사업의 양과 질의 확대는 필요하다. 주거안정을 통해 단순한 의식주 부분의 해결이 아닌, 심리적 안정과 출소자 가족의 지역사회 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는 재범률 감소와 같은 단순 통계만으로 산출해내기보다 더욱 큰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본 공단의 설립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주거지원을 위한 기금유치, 연계 기업 확보, 공공자원 협업 등의 자체적인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나라의 법무보호복지는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원기관의 접근성 증진

---

100) 나지훈, “법무보호복지공단 - 출소자 주거지원 참가자 재범률, 미참가자보다 8배 낮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0. 4. 23, 기사.



### (1)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제공기관 재배치

현재, 전국 59개 피해자지원센터는 단 5곳<sup>101)</sup>만을 제외한 나머지 54곳은 검찰청 내에 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02)</sup>

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법률복지 제공기관이 검찰청이나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안에 위치함으로 인해 각 지방검찰청 내부를 통한 신속연계가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경우는, 관련 사법기관의 출입한다는 생각이나 행동만으로도 피해 당시의 부정적 기억이 떠올라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겪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지원받기도 전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검찰청 공관에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것은 공급자 편의적 시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최근 법률구조공단의 일부 지소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sup>103)</sup> 내 법률복지 관련 기관 설치는, 법률복지 제공 매체를 검찰이나 법원 관사 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구조대상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규모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된 법률홈닥터가 훌륭한 모범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에게 복지와 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을 묻는다면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를 답할 것이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과 같은 곳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

101) 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제천시, 단양군), 김천·구미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천시, 구미시), 장흥·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강진군, 장흥군)

102)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전국센터찾기, [http://kvcv.kcva.or.kr/page/center\\_find.php?ccode=kvcv&page\\_idx=38&category\\_idx=70](http://kvcv.kcva.or.kr/page/center_find.php?ccode=kvcv&page_idx=38&category_idx=70), 2020. 7. 14.자 접속.

103) 행정복지센터는 과거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혼재돼 불리고 있는 읍면동 행정기구 명칭을 2019. 7. 17.부터 읍과 면은 사무소, 동은 주민센터로 통일하여 사용 중이다(출처: 이승록,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잡한 행정명칭 일원화”, 「제주의 소리(<http://www.jeju.sori.net>)」, 2019. 7. 19, 기사). 본 항에서는 행정복지센터로 기재하였다.



함한 보다 많은 국민이 한층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급자가 체감하게 되는 법률복지의 접근성이 한 층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복지관점 시각의 확장으로 접근한다면, 복지관도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게 된다.

실로 해당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이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 등의 제출과정이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데, 해당 서류의 발급방법은 행정복지센터의 직접방문을 통한 방법과 온라인상의 발급이 현실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회적 약자는 고령 및 장애, 언어적 소통제한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활용과 같은 온라인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직접방문을 택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절차의 간편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행정복지센터와 법률복지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법률복지의 실효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복지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하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다른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다른 복지서비스와 법률구조 서비스 간의 복합제공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지한 논의가 수반될 것이다<sup>104)</sup>

법률복지의 지원기관 정비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변호사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내 법률상담터 등의 연계를 통해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 이른바 ‘지역밀착형 법률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 사법접근센터 확충

사법접근센터는 기존의 법률상담터,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복지 제공기관과의

104) 황승훈,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100-101면.

중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수혜자가 법원 방문 시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센터 혹은 지원센터’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복지 전달체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기존의 전달체계와의 호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서비스 수급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과 공간이 마련되는 점은 분명 긍정적 요소가 매우 크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19년 3월 수원과 같은 해 12월 전주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사법 접근센터의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을 바라보는 인식은 더욱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센터 내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민형사상의 소송, 채무, 가정불화에 대한 상담은 곧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와도 병행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인데, 현행 제도상 복지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야 만이 가능하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는 전북변호사회, 전북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세무사회, 서민금융복지센터가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내 사법접근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법률상담소, 공인노무사회가 교대하며 상담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담 분야에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사회복지 상담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 제4절 법교육과 제도 활성화

### 1. 교육을 통한 법의식 강화

교육을 받을 권리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각성을 필히 내포하며, 법교육은 사회화 교육의 핵심요소가 된다. 법교육을 통해 국민은 민주적 정치화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의식을 함양하게 되며, 이는 곧 그 실현에 전제가 되는 법률복지의 보편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전 인생에 걸쳐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공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각성을 도울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는 교육과 법률복지이며, 이 두 가지는 민주공화국의 필수요소임이 분명하다.<sup>105)</sup>

일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법문화교육센터를 거론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도와 문화의 차이, 체계적인 법교육의 부재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을 위해 2011년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개소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 법질서 등 법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sup>106)</sup>

현재 전국에 설치된 관련 공단의 지역지부 중 일부를 활용하여, 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로 기존 인력재배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고도 신속한 교육실행이 이루어지리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법률상담이나 소송지원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더욱 예방적인 의미로서의 법률복지의 실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제2장 제1절에서 주로 다루었던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과 연령, 학력에 구분 없이 공통으로 법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이 다음의 <표4-1>을 통해 확인된다. 법

105) 김종철, “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와 발전방안: 법률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59-60면.

106) 대한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2019. 10. 15.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각성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사회적 약자의 건전한 의식증진과도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의 의식증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향상과 사회 성숙도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끼침이 충분히 예상된다.

소송구조의 차원을 넘어 대안적 분쟁 해결이나 공익 법률활동, 나아가 민주사회의 양성에 기여하는 법교육의 확충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제공받아야 할 보편적 법률복지의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07)</sup>

<표4-1> 법교육 필요 여부 응답결과 (단위: %)

구분(단위: %)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문항21) 학교에서의 법교육 필요성 “학교에서 법률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5	5.1	21.8	56.6	15.9
문항23) 일상에서의 법교육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법지식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1	4.6	19.9	61.5	13.8

자료: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245-254면,

## 2. 현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

### (1) 소송구조 제도

소송구조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원 직원 결정과 관련하여 소송구조 결정은 패소가 확실하지

107) 김종철, “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와 발전방안: 법률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67면.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재판부가 그런 판단 즉, ‘승소가 확실한 경우’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낮은 변호사 보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규상 보수가 10년째 100만 원에 멈추어 있어 굳이 변호사가 수임하려 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예산 미지출로 인해 2018년 해당 사업비의 1/4인 약 16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sup>108)</sup>

그러나 ‘승소가 확실한 사안’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재판결과를 미리 예단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으로 인해 재판부는 소송구조제도 자체를 다루기가 매우 신중할 것이 분명하다.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수많은 사건 중 승소가 명백한 사안은 일부만 해당하게 됨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송구조 대상의 기준을 소득별 구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소송참여 시 소송구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변호사 수임 보수의 현실화도 동반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이는 사건투입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함이 적절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sup>109)</sup>를 도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패소 경우에도 상대 변호사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10)</sup>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본 제도를 통해 법률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

108) 고훈솔, “약자 지원 소송구조 제도 유명무실”, 「한겨레」 조간 일간신문, 2019. 10. 20, 기사.

109)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는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변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고, 패소자의 부당한 응소 등 사법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비자 및 고용관계 소송, 인권소송, 환경보호 소송 등의 경우에 이를 채택하여 제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송의 성질과 유형에 상관없이 패소자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출처: 이종구,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부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각자부담의 원칙과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4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4, 438-452면).

110) 임희선,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구조 못 하는 구조제도, 여기 또 있었네” 「더스쿠프」, 2019. 12. 27, 기사.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피해회복 지원제도의 적극활용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1심 및 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가집행을 붙일 수 있다.<sup>111)</sup>

배상명령제도의 큰 장점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부담의 감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다수인 관계로 인용률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본 논문의 <표3-4> ‘2010년-2018년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에서 살펴본 결과, 배상명령 인용률은 2012년 35.7%, 2014년 30.8%, 2016년 25.6%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6년 법원은 총 8,975건의 배상명령사건을 처리하면서 25.6%인 2,298건을 인용, 최저율을 기록하였다.<sup>112)</sup>

앞에서의 <표3-5>의 형사조정제도 운용 현황도 위에서 논한 배상명령 제도와 유사한 의미에서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와 같이,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법률복지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에서부터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는 비단 본 항목에서 다룬 제도만이 아닌, 현행보다 더욱 적극적인 법제의 활용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 회복 및 안정과 경제적 손실 복구 등에 대해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사회 각 층으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없는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고칠 내용은 수정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활용하는 관심과 지혜가 절실하다.

111)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4, 211면.

112) 이승윤, “소송기록 열람·복사, 소송서류 송달시 피해자 신상 노출 막는다”, 「법률신문」, 2018. 1. 3, 기사.

## 제5장 결어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현재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즉 사회적 약자와 법률복지의 의의, 제공기관을 파악하였고 소송상·소송외적 지원, 피해자 지원 등과 같은 영역별 구분에 의한 법령을 정리하고 검토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과 제도를 정리하고, 현행규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사법절차적 기본권의 실효적 향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절차에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자’라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는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법률복지의 제공이란 단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을 넘어 약자와 소수의 권리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단어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관찰한 법률복지란 법률구조보다 더욱 큰 범위에서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이며, 원고와 피고 혹은 피의자, 피해자 등 각자 다른 상황에 놓인 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법률상담에서부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뢰관계인이나 참고인 혹은 진술조력인, 외국인과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원활한 법리진행을 위한 외국어통역사 및 수화통역사 지원, 그리고 가명조서 및 신변보호조치 등과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호제도 등과 같은 각종 법리적 진행과정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지원방식’이라 칭할 수 있다. 「법률구조



법」에서는 법률구조 대상을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는 곧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이라는 방식으로 법률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상황임을 전제로 하며, 좀 더 살펴본다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보호받을 이익이 최소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다루고 있다.

현행 법률복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부의 현행 법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기관의 위치가 사법기관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역별 복지제공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행 사법기관은 제도 활용에 다소 소극적임을 각종 운용현황을 통해 확인되었다.

지금보다 효율적인 법률복지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즉 입법론적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선변호인 제도의 수임료와 평가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진술조력인의 지원근거 개정과 상근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지원 시 신뢰관계인의 지원근거 강화가 필요하다. 사법복지센터의 확충과 법률복지사 제도의 신설과 같은 접근도 시급히 필요하다.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법원 방문 시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법률복지사 제도는 법적분쟁의 쟁점이 생존 등의 복지적 목적일 때 기존의 법률상담보다 훨씬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운용 및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복지를 실현하는 제공기관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률복지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단들의 개선과 인식전환도 당연하다. 공단의 질적서비스 강화와 타 민간법률구조법인과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유치, 연계가능 기업 확보, 공공자원 협업 등의 노력이 지금보



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무보호복지는 더욱 빛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검찰이나 법원 내에 법률복지 제공기관실이 입주해 있는 점은 공급자 위주의 접근방식이며, 이러한 접근성 저하를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내 설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곳이라면 지금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법률복지 대상자가 체감하게 되는 접근성 강화로 연계되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법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각성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사회적 약자의 건전한 의식증진과도 상관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의 의식증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향상과 사회 성숙도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률복지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소송구조제도, 배상명령, 형사조정제도 등을 주로 꼽았으나 그 외에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아니한 제도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법제의 활용을 통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사회 각 층으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제도의 신설이 아닌, 현 제도를 개선하고 고칠 내용은 수정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활용하는 관심과 지혜의 집합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 지금까지 주류 다수 사회의 반대지점에 위치하여, 소수로서 소외된 비중을 차지해온 사회적 약자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와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대에 도래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주류 다수 사회의 반대지점에 위치하여 소수로서 지내 온 사회적 약자를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와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대에 도달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한 실천적 의지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현철·차현숙, 「2019 국민법의회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0.
-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총서 06-37,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 김태성·홍선미·조성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2. 2.
- 박미숙·신의기·김민영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2016. 9.
- \_\_\_\_\_, 「2017 사법연감」, 2017. 9.
- \_\_\_\_\_, 「2018 사법연감」, 2018. 9.
- \_\_\_\_\_, 「2019 사법연감」, 2019. 9.
- \_\_\_\_\_,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7.
- 정해식·김태완·류정희 등,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12.
- 법무부, 「2019년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2019. 12.
-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 \_\_\_\_\_, 「2019. 범죄백서」, 2020.
- 보건복지부, 「2020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020. 2.

### 2. 논문

- 구본권, “법률구조법 개선방향”,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

- 장법연구회, 2019. 6.
- 국가인권위원회, “적극적 인권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연구”,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 공모, 2010.
- 김도훈,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9.
- 김태경,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와 심리지원 현황”, 201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8.
- 김원아·한영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변호사제도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8호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6.
- 김종철, “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와 발전방안: 법률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 김창균·김유정,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법과 정책」 제24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 김헌진,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연구: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6.
- 박경규, “법무보호복지의 현재와 점진적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6.
- 양천수, “법률구조 서비스의 내용으로서의 법률상담 서비스의 조직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12.
- 이세주,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 노인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8.
- 이종구,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부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각자부담의 원칙과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4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4.

정영훈,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과정의」 제479호, 2019. 2.  
 \_\_\_\_\_,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통권29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황승흠, “한국사회의 민사 법률구조의 이념과 현실” 「법학논총」 제21권 제2호,  
 2009. 2.  
 \_\_\_\_\_, “법률구조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성”, 「법과사회」 제43권 0호, 법과사  
 회이론학회, 2012. 12.

### 3. 기타

기획재정부,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도참조자료,  
 2018. 10. 17.  
 고한솔, “약자 지원 ‘소송구조 제도’ 유명무실”, 「한겨레」 조간 일간신문, 2019.  
 10. 20, 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su.klac.or.kr)  
 나지훈, “법무보호복지공단 - 출소자 주거지원 참가자 재범률, 미참가자보다 8배  
 낮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0. 4. 23, 기사  
 대검찰청 홈페이지(spo.go.kr)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방  
 안 등 의결”, 2018. 9. 4, 대법원 보도자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2019. 10. 15.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17.  
 12. 14, 토론회자료  
 박경준, “국선변호인제도, 피고인 손에 대등한 무기를”, 「서울대학교대학신문」,

2019. 11. 24, 기사

박병탁,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앞서 국선변호인제 개선해야”, 「대한민국국회  
‘국회뉴스ON’」, 2019. 1. 10, 기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lawqa.jinbo.net)

법률구조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legalaid.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lawhome.or.kr)

법률신문뉴스, “고양지원·평택지원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소”, 2019. 10.  
28, 보도자료

법률저널, “전국 246곳 무변촌에 마을변호사 414명 위촉”, 2013. 6. 7, 보도자료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홈페이지(moj.go.kr)

법무부,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개최 - 무변촌 제로달성, 마을변호사  
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2019. 12. 17, 보도자료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확대”, 2019. 6. 20, 정책실명  
공개과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easylaw.go.kr)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slb.scourt.go.kr)

스마일센터 홈페이지(resmile.or.kr)

신종철, “박주민-법률구조공단 소송사건 급증 업무과중. 법률서비스 저하 우려”,  
「로리더 법률뉴스 창」, 2018. 10. 21, 기사

안성모·공성윤, “수도권-비수도권, 두 개의 대한민국”, 「시사저널」, 2020. 2.  
4, 기사

이승록,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잡한 행정명칭 일원화”, 「제주의 소리  
(jejusori.net)」, 2019. 7. 19, 기사

이승윤, “소송기록 열람·복사,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 신상 노출 막는다”, 「법  
률신문」, 2018. 1. 3, 기사

\_\_\_\_\_, “법원 소송구조 3년 새 30% 감소. 인용률도 50% 불과”, 「법률신문」,  
2018. 10. 10, 기사

임성택,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과 변호사 의무채용”, 「법조광장」, 2017. 1. 12,

기사

임희선, “[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구조 못 하는 구조제도, 여기 또 있었네”, 「더스쿠프」, 2019. 12. 27, 기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홈페이지(kcvc.kcva.or.kr)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홈페이지(klri.re.kr/slc.do)

헌법재판소 홈페이지(ccourt.go.kr)

<ABSTRACT>

Study on Legal Welfare for Socially Disadvantaged

Kang, Dong Hyo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Park, Kyu Yong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legal welfare for socially disadvantaged up until today. It identified the meaning of socially disadvantaged and legal welfare as well as providing institutions. Next, it investigated legislation by categories such as analysis of support system judicially and extra-judicially and victim support. It also analyzed the current regulations of legal welfare, problems in terms of operations, and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ve limited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in legal procedures compared to other classes in a relative sense due to economic, physical, and other conditions from viewpoints of effective enjoyment of basic human rights in terms of judicial proceedings. Furthermore, they are vulnerable to be excluded from opportunities of receiving equal benefits as a member of the society without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Legal welfare for them can be the basic premise to practically implement legal equality before the law. Providing legal welfare should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rights of minorities and vulnerable people should be treated as equal as other social members beyond providing a favor to the vulnerable.

Legal welfare is a welfare service provided to citizens, which is a larger

scope than that of legal aid, and it is to aid those who are placed in different circumstances faced to plaintiffs and defendants, or suspects and victims. Legal welfare is a series of processes and aid methods to support citizens in various legal processes such as legal counseling of small or large cases occurred in daily living, a trusted person or intermediary provided in investigation or during the course of the trial, aid of fore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sign language interpreters to facilitate a legal process for foreigners and persons with hearing-impaired or language disorder, and various protection systems to support criminal victims including prosecutorial record written using false name and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The major factors that hindered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egal welfare were studied, and the results exhibited that some of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were optional rules, which did not have sufficient legal enforcement, and there were deviations in welfare offering between regions. The results also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that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s were passive in utilizing the system.

To achieve the practice of legal welfare more efficiently than now, first,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preceded.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lawyer's fee and assessment method of the state-appointed defense attorney system, revise the foundation of supporting intermediary, recruit more regular full-time personnel, and strengthen the basis to support suspects of trusted person. In addition, legal welfare centers are needed to be expanded and legal welfare worker system is needed to be established. The legal welfare worker system can be much more effective approaches than existing legal counseling if legal disputes are linked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To raise the operation of legal welfare and its effectiveness, the improvement and perception change of legal aid corporations that realize legal welfare are required. A measure to improve accessibility to legal welfare offering organizations is also suggested by chang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laces of legal welfare offering organizations in public prosecutors' offices or courts into spaces such as administration welfare centers or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addition, if the awareness of social members can be raised beyond the litigation aid through legal education, it would be linked with enhancements of sound consciousnes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Efforts should be made to raise the legal welfare to one step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by actively utilizing the current systems such as litigation aid system, compensation order, and criminal mediation program.

Keywords: socially disadvantaged, legal welfare, legal aid, extra-judicial support, support of criminal victims, legal accessibility, center for access to justice, legal welfare worker, legal education